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특례 신설〉

■ 정경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030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1
IV. 검토의견	2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특례 신설(안 별표 제218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경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3. 12. 20.

다. 회 부 일 : 2023. 12.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설립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각종 학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그런데 같은 제정법률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국유·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8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경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안번호 제260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특례 신설(안 별표 제218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특례 신설 - 사용료등의 감면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¹⁾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²⁾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정경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안번호 제26029호)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업무를 지원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하는 등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기관임. 다만 현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무총리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관리를 받고 있는데, 교육과정 개발에서 각종 교육평가에 이르는 교육정책의 수립·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 주요 취지임.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인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개정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담 등을 경감함으로써 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임.

둘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에서는 정부가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³⁾,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할 경우 중복지원의 결과가 되는지 여부 및 특례부여가 이러한 재정 지원에 비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셋째, 국유재산 특례의 요건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평가원 설립 요건 및 사업 범위⁴⁾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제11조(운영 재원)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설립·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교육과정 및 학력평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자료의 발간 등에 따른 사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출연금) ①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제2조(법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평가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평가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과 구체성이라는 특례요건은 충족한다고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21년 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설정한 존속기한 원칙⁵⁾에 따라 그 기한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소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안번호 제26029호)의 심사결과를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음.

-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② 평가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업) ① 평가원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평가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검·인정업무의 지원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기준의 연구·개발
 4. 학업성취도 평가도구의 개발 및 문제은행 체제의 구축
 5. 각종 교육 및 심리검사 도구의 연구·개발
 6.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시험의 출제·시행 및 채점
 7. 교육과정 및 학력평가제도 발전방안의 연구 및 외국과의 비교
 8. 교육과정 및 학력평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자료의 발간과 이에 따른 수익사업
 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거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 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일부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5)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동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평가원은 청사 이전(충북 진천군) 이후 청사부지 및 건물을 자체 소유 중이므로, 국유재산 특례 적용 대상이 부재하며, 현재까지 국유재산 특례 사용 실적이 없고, 향후 청사 이전 등 국유재산 사용 계획도 없어 별도의 특례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의안번호 제26029호)

제13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평가원에 국유·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평가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 신 설 >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3. 12. 31.

문 의 처
02)6788-5151